

2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5호 1998. 12. 31

개 정 이 유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의 절차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물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의2).
- 나.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사이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수용·공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함(제9조의3).
-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안의 공장의 범위와 대도시안의 공장으로서 대도시외로 이전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

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대상인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함(제47조제1항·제78조의7 및 제11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물납의 절차 등) ①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물납부동산변경신청 및 그 허가통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물납신청 또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 : 별지 제7호의2서식

2. 물납허가 통지 : 별지 제7호의3서식

②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2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말한다.

제9조의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영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지가공시및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

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9조의4(분납신청서)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전단중 “업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를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로,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나목중 “대도시내”를 “대도시안”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을 증설하는 경우”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하며, 동항동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대도시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의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의7 전단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78조의8중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을 “영 제142조”로 한다.

제84조제4항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4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영문)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영문)]

Issued No.		Settlement Period	
		Immediately	
CERTIFICATE OF LOCAL TAX		<input type="checkbox"/> COMPLETE PAYMENT	
		<input type="checkbox"/> COLLECTION DEFER,ENT	
		<input type="checkbox"/> NON-TAXATION	
Taxpayer	①Name in full (Name of rep.)		
	③Address (Head Office)	(Tel :)	
④ Name of corporation			
⑤ Location of corporation			
⑥ Item of business			
<input type="checkbox"/>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is no delinquency in local tax payment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is no delinquency in local tax payment except for the collection-deferred delinqu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9,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has been no taxation(excluding per capita rate of resident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a of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S/ Official seal affixed.			
※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l(month/ day/ year) from the date of its issuance.			
※ There is no Accompanying Document		Fee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Municipal Ordinance	

21226-17111civil affair form
Approved. 1998. 9. 23

210mm×297mm
(newsprint 54g/mm²)